

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68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3. 14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 사유

- 행정 편의주의 요소가 강하고 군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

2. 주요 골자

- 입장제한완화 (안 제16조)

3. 참고 사항

- 행정규제개혁 추진 - 자치법규 정비

4.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입장제한) 전염병질환자,정신질환자,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·훼손 하는자 및 군수가 시설에 입장 또는 계속 이용케 함이 청소년 건전육성과 공공의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입장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건전 청소년 육성에 저해 될 우려가 있는 사람</u> 2. <u>전염병 감염자</u> 3. <u>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</u> 4. <u>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</u> 5. <u>기타 군수가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	<p>제16조(입장제한) 전염병질환자, 정신질환자,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·훼손하는 자 및 군수가 시설에 입장 또는 계속 이용케 함이 청소년 건전육성과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</p>